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032호
2.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3. 발의일자 : 2019. 9. 6.
4. 회부일자 : 2019. 10. 22.

II. 제안이유

- 우리 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부치다”로 순화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및 기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조례안 [별첨] 참고)
3. 기 타
 - 입법예고(2019.10.25.~11.1):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김인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032호로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일관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이 정비하고자 하는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 영향으로 인해 일본과 같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한자의 음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부(公簿)’(공문서)나 ‘부분(副本)’(복사본)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29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의하다”, “당해”, “기타”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회의에 부치다”, “해당”, “그 밖의” 등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22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조문인 ‘(기타)’를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

동 조례의 제11조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22조의 ‘(기타)’는 ‘(시행세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같은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047, 2019.11.18.).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